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11 선고 2021나3152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11 선고 2021나315227 판결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6. 9 선고 2020가단228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종결 2022. 4. 13.

판결선고 2022. 5. 11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. 6. 9. 선고 2020가단2281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안동시 F 임야 2261㎡ 중, 피고 B, D, E는 각 2261분의 565 지분에 관하여, 피고 C은 2261분의 56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. 11. 11. 접수 제339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위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다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F 임야 9044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. 11. 11. 접수 제3391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위 임야는 원고의 소유이다.

이 유

민사소송법 제117조, 제124조에 따르면, 소장, 준비서면,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,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. 제1심 법원이 2021. 3. 26.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,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‘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,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.’라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, 원고가 2021. 3. 30.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사실, 위 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지영, 판사 윤남현, 판사 장래아